

□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의 합격기준

영역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 (2010학년도 이전 편입학자)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 (2011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2015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비고
교직 과정 이수 과목	교직 이론 14학점 이상(7과목 이상) - 교육학개론 - 교육철학 및 교육사 -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 -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 교육심리 - 교육사회 -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14학점 이상(7과목 이상) - 교육학개론(2학점) - 교육철학 및 교육사(2학점) -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2학점) -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2학점) - 교육심리(2학점) - 교육사회(2학점) -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2학점)	12학점 이상(6과목 이상) - 교육학개론(2학점) - 교육철학 및 교육사(2학점) - 교육과정(2학점) - 교육평가(2학점) -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2학점) - 교육심리(2학점) - 교육사회(2학점) -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2학점) - 생활지도 및 상담(2학점) - 교육학 논술연습(2학점) (※「교육학논술연습」교과목은 교직이론 6과목을 모두 이수 한 후 수강가능.)	
	교과 교육 4학점 이상(2과목 이상) - 교과교육론 -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삭제	전공교과에 편성 이수(3과목 8학점) 과학교육론, 과학논리교육, 화학교재연구및지도법	
	교직 소양 -	4학점 이상 - 특수교육학 개론(2학점) - 교직실무(2학점)	6학점 이상 - 특수교육학개론(2학점) - 교직실무(2학점) - 학교폭력예방의 이론과 실제(2학점)	
	교육 실습 - 교육실습(2학점)	4학점 이상 - 교육실습(2학점) - 교육봉사활동(2학점)	4학점 이상 - 학교현장실습(2학점) - 교육봉사활동(2학점)	
전공과목	42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5과목(14학점) 이상 포함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7과목(21학점) 이상 포함 - 표시과목별 교과교육영역 3과목 (8학점) 이상 포함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7과목(21학점) 이상 포함 - 표시과목별 교과교육영역 3과목 (8학점) 이상 포함	
	기본이수과목: 물리화학 I, 유기화학 I, 무기화학 I, 분석화학, 물리화학II 물리화학실험, 유기화학실험, 무기화학실험, 분석화학실험			
교직과정 적성 및 인성 검사 기준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에서 적격판정 1회 이상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에서 적격판정 1회 이상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에서 적격판정 2회 이상	
교직과정 성적기준	- 졸업전체 평균성적 전공과목 80/100점 이상, 교직과목 80/100점 이상	- 졸업전체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 졸업전체 평균성적 전공과목 75/100점 이상, 교직과목 80/100점 이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2회 이상. (※ 단, 2016.3.1일 기준 2학기의 교직과정이 남은 사람은 1회 실시, 2학기 미만이 남은 사람은 제외)			
성인지교육	- 유아교육과 : 4회 이상 - 교직과정, 교육대학원 : 2회 이상 (※ 단, 2021.2.9. 교원양성과정 이수시까지 2학기 초과하는 자부터 적용, 2021.2.9일 이전 입학자는 2회 이상)			신 설
기타	- (결격사유 확인) 2021.6.23. 이후 자격검정 대상자부터 교사 자격 취득 결격사유 미해당 확인 필수 (※ 「유아교육법」 제22조의2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2 * 참조)			신 설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2(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 「유아교육법」 제22조의2 동일

제21조의2(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본조신설 2020. 12. 22.]

[시행일 : 2021. 6. 23.] 제22조의2